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이 기 수 / 고려대 법대 교수

SK텔레콤(주)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건

1998. 2.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31호 / 사건번호 9712약011783

피심인의 행위

A. 대한텔레콤을 위한 차별행위

피심인(SKTelcom 주식회사)은 대한텔레콤(주)와 1995. 3. 13.부터 1997. 10. 2. 까지 9건의 용역거래중 외주용역과 1995. 4. 27.부터 1997. 3. 25. 까지 4건의 장비구매거래를 통하여 실제 외주용역에 들어간 비용보다 평균 46.5%, 장비의 조달원가보다 평균 38.3%에 해당하는 거래차액을 대한텔레콤(주)가 취하도록 거래대금을 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B. 선경유통(주)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피심인은 1996년 4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자신의 대리점에 계열회사인 선경유통(주)로 하여금 CDMA 셀룰러폰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무를 맡기면서 약정 업무대행수수료(매출액의 1.5%)보다 현저하게 과다한 업무대행수수료(매출액의 5%)를 용인해 준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

A. 대한텔레콤(주)를 위한 차별행위

1) 계열회사를 현저하게 유리하게 한 거래행위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자기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

- ① 대한텔레콤(주)는 회사가 설립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사업에 따른 매출은 전혀 없고 영업손실만 크게 발생한 상태였으나 1994년 9월에는 피심인으로부터 정보기술종합계획용역을 수주하면서 매출이 발생하여 1994년에는 영업이익이 6천4백만원이 발생하였다.
- ② 대규모집단 「선경」이 피심인의 최대주주가 되어 민영화되기 직전 해인 1993년 매출액 대비 4.6%인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선경」이 최대주주가 된 다음해인 1995년 매출액대비 8.4%로 그 비율이 1.8배로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동안 40%에서 21%로 그 비율이 반감하였다.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③ 대한텔레콤(주)의 1985년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률도 동종산업평균(0.52%)에 비해 8배이상 높은 사실을 감안할 때, 위 거래행위가 피심인이 계열회사인 대한텔레콤(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정당한 이유의 존재여부

번호	피심인의 주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1	이 사건 장비구매상 차액은 대한텔레콤(주)가 단순구매대행이 아니라 장비구매기종선정구매협의, 구매, 설치, 시운전까지에 관한 일체를 책임진데 대한 대가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과다하지 않으며, 이 사건 거래가격이 통상거래 가격과 비교할 때 그 가격이 높지 않다.	장비구입에서 대한텔레콤(주)의 역할이 통상의 구매대행 이상으로 특별한 대가를 필요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은 첨단기술장비의 경우에는 기종설명, 설치, 시운전 등은 구매대행자가 아니라 제조자나 판매자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달청이 작성한 의자구매업무편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구매중개에 대하여는 최고 구매가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지급한 거래가격은 통상가격보다 높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이 사건 계약동기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동 거래가 정당하다.	주장사실만을 갖고 대한텔레콤(주)의 기술습득비용을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직접 외국업체와 계약할 때에 비해서 가격과 효율면에서 효과가 있으므로 위치액이 과다한 것이 아니다.	이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심인이 대한텔레콤(주)의 거래를 시작할 시점부터 매출액 대비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위 행위사실과 같은 용역계약의 성질이 법률상 도급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미 계약에 의해 가격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한텔레콤(주)가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를 세세하게 감독할 필요가 없었다.	피심인과 대한텔레콤(주)의 부산·경남지역 이동전화 품질개선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용역금액이 과대 책정되었거나 잘못 산정되었음을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대한텔레콤(주)가 그 금액을 환불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에 있어서는 거래의 법적성질 및 가격이 확정된 것이나 아니면 사후정산을 해야하는 것이나보다는 전체 거래과정을 통하여 거래내용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나의 여부의 문제에 본질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가격의 확정 전후만을 문제삼고 있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B. 선경유통(주)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1) 계열회사를 현저하게 유리하게 한 거래행위

피심인이 계열회사인 선경유통(주)에 대하여 약정한 업무대행수수료보다 3배 이상의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였는 바, 이는 계열회사를 현저하게 유리하게 한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2)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

피심인이 작성한 “SKD단말기 판매사업 현황”에 의하면 피심인이 매출이익에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제한금

액을 유보적으로 하여 선경유통(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심인이 계열회사인 선경유통(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정당한 이유의 존재여부

피심인은 동일한 거래관계에 있는 신세기통신의 글로텔, 서울이동통신의 노바, 나레이동통신의 파랑새 등의 단말기 유통업체의 판매마진은 약 4~6%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할 때 위 차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약정수수료가 정해진 이 사건에서의 과다여부는 우선적으로 약정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및 주문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2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주 문

피심인은 자신의 계열회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거래 및 장비구매대행거래를 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비용이나 조달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과다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2. 피심인의 대리점에 이동전화단말기를 공급하는 업무를 맡기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적정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해설 및 평석

1. 머리말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에 특정회사가 거래차액을 그의 계열회사가 취하도록 거래대금을 정하여 지급하였고, 약정 업무대행수수료(매출액의 1.5%)보다 현저하게 과다한 업무대행수수료(매출액의 5%)를 용인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차별취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일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가운데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의 경우의 위법성 판단문제를 검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알아본 이후에 결미를 짓는다.

2. 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 의의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통하여 이같은 동등한 경쟁의 조건이 되는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이미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¹⁾ 이에

1)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54쪽 ; 손주찬, 경제법, 1994, 233쪽.

공정거래법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제도적인 이유로 경제력 및 경쟁상의 차이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후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다.²⁾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은 두 가지가 있다. 미국과 독일법은 법에 일반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해석에 의하여 규제하는 형식이고, 우리와 일본법은 추상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함으로써 금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거래계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법적 불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고시를 통하여 열거한 행위만을 금지하므로 거래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포착하여 규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금지되는 행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³⁾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7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나, 그 유형 또한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시행령별표에서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일반지정)와 특수한 사업분야에만 지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특수지정)로 구분된다. 특수지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지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조치기준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특정분야, 특정행위로서 보다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⁴⁾

4. 당연위법행위와 조리위법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실제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부당하게’라는 판단기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을 정형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형태들에 대하여 매번 위법성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은 어떠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면 그 경중에 따라 위법성이 현저히 추정되는 행위인지 또는 좀더 면밀한 위법성판단을 필요로 하는 행위인지를 구별해 주는 기준이 된다.⁵⁾

1) 당연위법행위

‘정당한 이유없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당연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가 일단 발생되면 당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위법한 행위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때 정당한 이유란 개별적으로 구체적 사안마다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론적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이 침해되지 않거나 그 침해 또는 경쟁감소의 정도가 극미하여 공정한 거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정주환, *한국경제법*, 전정판, 1997, 109쪽.

3)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55쪽; 이남기, *경제법－공정거래법－*, 1996, 340쪽 아래.

4)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55쪽; 정주환, *한국경제법*, 전정판, 1997, 114쪽; 손주찬, *경제법*, 1994, 238쪽.

5)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55쪽.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현재 공정거래법상 당연위법행위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① 공동의 거래거절 ②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③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 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다.

그 가운데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가격·품질·수량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이다.⁶⁾

2) 조리위법행위

조리위법행위는 열거된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규정이 부당하게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의 법문으로 표현된 불공정거래행위유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유형의 행위가 일단 발생하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발생된 행위로 인하여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침해하거나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상 조리위법행위에는 위의 당연위법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⁷⁾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관을 하면 다음 표와 같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유 형	세 부 유 형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의 거래거절 – 당연위법 행위• 기타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당연 위법행위• 집단적 차별	
경쟁사업자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염매 – 당연위법행위• 부당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	
거래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백화점업② 학습교재등의 판매업③ 주유소등 석유판매업④ 가맹사업(프랜차이즈)⑤ 신문업⑥ 할인특별판매행위⑦ 경품류제공⑧ 공공건설공사-저가입찰⑨ 병행수입⑩ 국제계약상
거래상지위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구속조건부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 상대방 제한	
사업활동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부당이용• 인력부당 유인 · 채용• 거래처이전방해행위• 기타	
부당한 표시 ·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 · 광고• 기만적인 표시 ·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비방적인 표시 · 광고	
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의 지원		

6) 유형 및 기준 제2호 다목.

7)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57쪽.

5.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공정거래법은 법이 금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행위로서의 시정조치, 시정명령 또는 행정벌로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⁸⁾ 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종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발 강제규정과 검찰의 고발요청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범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은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전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했다.⁹⁾ 이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개정작업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심했던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리상 검찰의 공소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데서 찾을 수 있었다.¹⁰⁾ 종전 백화점의 사기세일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자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과거사는 좋은 예이다.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타협안 정도로 보아도 무방하다. 개정법에 따르면 아직도 원칙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공소의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검찰총장은 이러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6. 맷음말

당연위법행위가 일단 발생되면 당연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위법한 행위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때 정당한 이유란 개별적으로 구체적 사안마다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론적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이 침해되지 않거나 그 침해 또는 경쟁감소의 정도가 극미하여 공정한 거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적 취급은 사업자가 가격, 수량, 결제조건 및 기타 거래조건을 지역별 또는 거래상대방별로 부당하게 다르게 취급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원자재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공급사업자

8) 이기수, 경제법, 204쪽 아래; 정주환, 한국경제법, 전정판, 1997, 148쪽 아래.

9) 이기수, 경제법, 205쪽; 정주환, 한국경제법, 전정판, 1997, 148쪽.

10) 또한, 전속고발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형별적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공정거래법 제71조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소비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과 구체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고발권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기도 한 실정이었다.

와 친분관계가 있는 자나 자기의 계열회사에게 다른 회사보다 우선 공급하거나, 가격을 싸게 공급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사안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가 거래차액을 그의 계열회사가 취하도록 거래대금을 정하여 지급하였고, 약정 업무대행수수료보다 현저하게 과다한 업무대행수수료를 용인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계열 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위법성 여부가 판단된다.

그런데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에 있어서는 거래의 법적성질 및 가격이 확정된 것이냐 아니면 사후정산을 해야하는 것이냐보다는 전체 거래과정을 통하여 거래내용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려는 것인지의 여부의 문제에 본질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가격의 확정 전후만을 문제삼아서 판단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일리가 있다. 한편 피심인이 유사업체로서 단말기 유통업체의 판매마진이 약 4~6%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의 차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약정수수료가 정해진 경우에서의 과다여부는 우선적으로 약정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하였는데, 이는 유사업체의 기준을 비교·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기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공정위 인사

'98년 5월 현재

◎ 이사관 승진

- 공보관 : 이한익 (李漢億)
- 기획관리관 : 이동욱 (李東旭)
- 소비자보호국장 : 강대형 (姜大衡)
- 본부 : 오성환 (吳星煥)

* 중앙공무원교육원 훈련 과정

◎ 서기관 전보

- 독점국 기업결합과 : 김재중 (金載中, 前 정책국 국제업무1과)
- 소비자보호국 기획과 : 정태완 (鄭泰完, 前 총무과)
- 소비자보호국 약관심사과 : 박태동 (朴泰董, 前 소비자보호국 기획과)
- 하도급국 하도급기획과 : 최정호 (崔正鎬, 前 소비자보호국 약관심사과)

◎ 사무관 전보

- | | |
|--|--|
|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1담당관실 : 조홍선 (曹洪善, 前 기획관리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 독점국 독점관리과 : 김진홍 (金晉弘, 前 정책국 국제업무1과) |
|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2담당관실 : 육성권 (陸成權, 前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2담당관실) | 경쟁국 경쟁촉진과 : 윤용규 (尹龍圭, 前 대구지방사무소 경쟁과장) |
|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3담당관실 : 김순철 (金順喆, 前 독점국 독점관리과) | 경쟁국 단체과 : 최현철 (崔賢哲, 前 경쟁국 경쟁촉진과) |
|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4담당관실 : 박주영 (朴柱泳, 前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4담당관실) | 소비자보호국 기획과 : 박재규 (朴在圭, 前 조사국 조사기획과) |
|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5담당관실 : 조성국 (曹聖國, 前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1담당관실) | 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 : 김영관 (金榮寬, 前 공정거래위원회) |
| 총무과 : 윤창배 (尹昌培, 前 대구지방사무소 소비자보호과장) | 소비자보호국 약관심사과 : 엄기섭 (嚴基燮, 前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3담당관실) |
| 정책국 제도개선과 : 강홍기 (姜洪基, 前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3담당관실) | 조사국 조사기획과 : 김홍석 (金洪奭, 前 조사국 조사과) |
| 정책국 국제업무1과 : 이현철 (李炫澈, 前 정책국 국제업무2과) | 조사국 조사1과 : 박도하 (朴道夏, 前 경쟁국 경쟁촉진과) |
| 정책국 국제업무2과 : 이필현 (李弼鉉, 前 공정거래위원회) | 대구지방사무소 경쟁과장 : 이영일 (李永日, 前 경쟁국 단체과) |
| 정책국 국제업무3과 : 김의환 (金義桓, 前 독점국 기업결합과) | 대구지방사무소 소비자보호과장 : 최태환 (崔太煥, 前 독점국 기업결합과) |
| 독점국 기업결합과 : 정창욱 (鄭鍾旭, 前 공정거래위원회) | |